

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7일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	
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	성명			주민등록번호(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)	
	주소				
사용승낙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		
위치					
면적					
용도	[] 건설기계대여업용 [] 건설기계매매업용				

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고있으니 건설기계(대여·매매업)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(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)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토지등기사항증명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

주기장 상태	용도지역			
	지목			
	바닥상태		진입로상태	
	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			
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(제57조 제62조)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